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8. 25.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64호로 2025년 8월 14일 이순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09.15.)하여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다만, 현행 조례의 지원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 지원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임.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를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규정에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지원 등)는 교섭단체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의 개별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 지원으로 일원화함.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지원 규정에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를 규정하여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205 의회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 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4.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5.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 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3.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는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